

의안번호	제 171 호
의 결 연 월 일	2011년 월 일 (제 회)

**충청북도문화재단대표이사및이사선임과정규명
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**

제 출 자	김양희 의원외 6인
제출연월일	2011년 5월 12일

충청북도문화재단대표이사및이사선임과정규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17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1년 5월 12일

발 의 자 : 김양희 의원

강현삼·김종필·김봉희
김도경·임현·김재종의원

1. 주 문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, 「동법시행령」 제56조, 「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“충청북도문화재단대표이사 및이사선임과정규명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” 를 구성한다.
- 활동기간 : 2011년 5월 23(월)일부터 2011년 6월 22(수)일까지로 한다.
- 위 원 수 : 7명 이내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문화재단이 7월 1일 출범함에 따라 재단 대표이사과 21 명의 이사가 선임되었으나,
- 대표이사 및 이사선임 과정의 정치성 개입에 관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충북도의회 차원에서 대표이사 및 이사선임에 과정의 정치성개입, 특정정당편향, 예술·문화에 관한 전문성, 특정정당개입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·평가하고,
- 충청북도 출자·출연기관의 대표이사 및 이사선임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를 촉구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 : 관련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「동법시행령」 제56조
- 「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 및 제9조

관련법규 발췌

【 지방자치법 】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【 지방자치법 시행령 】

제56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【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】

제7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③ 의원의 자격심사, 윤리심사,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 다만, 그 사안에 대한 심사대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의장이

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의 선출과 개선(改選))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출한다.

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